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벤처기업의 요건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으로 확대〉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4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벤처기업의 요건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으로 확대	2
※ 참고자료	7
1.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8.
3. 회부연월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다만,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벤처기업의 요건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으로 확대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u> 일 것	1. ----- ----- <u>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u>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u>중견기업(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한다)</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이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별로 매출액이 400~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다출자자가 아닌 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말함¹⁾.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세조세조정법」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개정안은 중소기업이었다가 매출액 등이 증가하여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도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통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식매수선택권 및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등 현행법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해지므로,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영권 보호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다만,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²⁾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에도 중소기업이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증가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되었더라도 그 즉시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최대 1,800억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10호, 2025.05.19.)을 입법 예고 하는 등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

[중소기업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	
현행	개편	현행	개편
	1,800억원 이하 ^{신설}		140억원 이하 ^{신설}
1,5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200억원 이하 ^{신설}		100억원 이하 ^{신설}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60억원 이하 ^{신설}
60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억원 이하 ^{신설}
		3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신설}
		10억원 이하	

※ 2구간 신설(1,200억원 이하, 1,800억원 이하)

※ 5구간 신설(15억원 이하, 40억원 이하, 6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40억원 이하)

1구간 폐지(10억원 이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5.1.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기업규모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현행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벤처기업의 핵심요건으로서 이미 성장한 기업이 현행법의 특례제도를 활용하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

[참고자료]

1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분류	내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6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58의3②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최소업력(3년→미적용), 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 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8① 정책자금 융자계획(중기청 공고)
지배구조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1주당 2~10개 의결권 부여) * 조건 : 마지막 투자까지 3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창업 이후 누적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가장 나중 투자가 50억원 이상	벤처법§16의11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 특 법 § 58④ 지 특 법 § 58②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5②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16의2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16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시행령§11의3⑥
	▶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조건 완화 (배당가능이익 없이 순자산액으로 지급 가능)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16의18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